

면지

식 순

P · R · O · G · R · A · M

4:00~4:10 인사말씀

4:10~4:50 주제발표

발표 왜 예산은 늘어나는데 정책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가족주의를 통해 본 한국 가족정책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4:50~5:50 종합토론

참고 1 >> 포럼위원 명단

성명	소속	직위
김형주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문일	한양대학교	교수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신경아	한림대학교	교수
신성식	중앙일보	선임기자
염지혜	중원대학교	교수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소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철선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혜경	배재대학교	교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최숙희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최은영	충북대학교	교수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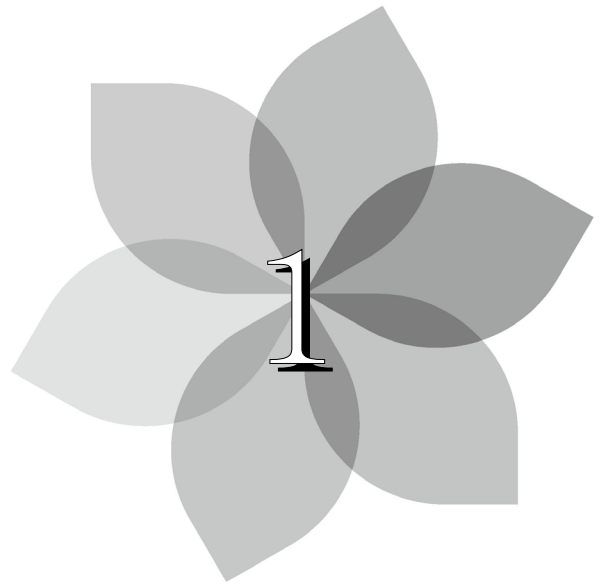
참고 2 >> 포럼 주제 및 일정

일시	장소	주제	발표
4월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정책 발전방향과 향상 방안 인구자질	이삼식 박문일
5월 27일	프라자 호텔 4층 Pine Room	저출산고령화 대응 고령자 활용 방안	이철선 장지연
7월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응 여성인력 활용 방안	최은영 신경아
9월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응 외국인력 활용 방안	이규용 김형주
12월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종합적 인구가족정책 방안	윤홍식

차 례

C · O · N · T · E · N · T · S

- ▣ 왜 예산은 늘어나는데 정책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1
 - 가족주의를 통해 본 한국 가족정책
 -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왜 예산은 늘어나는데 정책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윤 흥 식
(인하대학교 교수)

윤 홍 식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1. 문제제기

가족주의는 한국사회의 복지제공방식을 설명하는 중요한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개인의 복지와 관련해 가족주의는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공적 복지체제를 대신해 가족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해주는 논거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가족주의 이념 하에서 돌봄은 철저히 가족의 책임으로 간주되었다. 사실 말이 좋아 가족이 돌봄을 담당하는 것이지 돌봄의 대부분은 여성이 담당했다. 여성에게 돌봄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제1의 책무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쇠퇴하고 서비스업이 탈산업사회의 핵심 산업으로 등장하면서 전통적 성별 분업에 근거한 가족은 더 이상 설자리를 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치솟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인해 남성의 소득만으로 안정적 가족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방법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설은 지난 20년 동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좀처럼 변화하지 않았다. 1990년 47.0%이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48.6%, 2010년 49.4%로 지난 20년 간 2.4%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통계청, 2011).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인구구조와 가족도 급격한 변화했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인데도 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지난 2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을까? 지난 20년 동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족 내 성별분업 또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아동돌봄과 관련된 정책인프라는 눈에 띄게 확대되었다. 아동보육정책(유치원 포함)에 투입된 사회지출 규모는 1990년 GDP 대비 0.01%에서 2005년 0.17%로 무려 17배나 증가했

다(OECD, 2008).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보육예산의 증가는 더 놀랍다. 2006년 1.72조원이던 보육예산은 2010년에는 3.94조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1990년 1.2%에 불과하던 취학 전 아동의 보육비율은 2008년 41.4%로 급증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이렇듯 예산과 아동보육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는데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불과 2.4%포인트 밖에 높아지지 않았다. 여성에게 부과되는 돌봄 책임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결정적 장애라면, 아동 돌봄의 탈가족화가 급격히 확대 되었음에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미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 현상이다.

더욱이 다른 가족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가족의 경제적 안정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은 좀처럼 노동시장에 나가지 않았다. 아니 나가지 못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어쩌면 우리의 일반적 이해와 달리 한 사회의 돌봄 제공 방식은 돌봄과 관련된 물적 인프라만이 아닌 돌봄에 대한 해당 사회의 가치, 즉 가족주의의 특성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무리 공적 돌봄 인프라를 확대해도 ‘아동은 모가 양육해야하고, 가족은 가족이 돌봐야한다’는 가족주의 담론이 지배적이라면, 국가의 정책 개입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처럼 가족주의는 돌봄정책의 전망을 제시하려는 우리에게 깊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 해 본 연구는 가족주의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한 사회에서 가족주의가 발현되는 양태로서 돌봄 제공방식의 이론적 유형화에 대해 검토했다. 먼저 다음 장에서는 가족주의를 둘러싼 논쟁을 검토했다. 가족주의(familism)와 가족주의(familialism)의 구분을 시도하고, 가족주의가 복지국가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인지 아니면 한 사회의 돌봄 제공방식을 결정하는 준거인지와 한국 가족주의 특성을 검토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앞서 제기된 논의를 근거로 한 사회의 돌봄 제공방식을 이론적 수준에서 유형화 했다. 유형화는 탈가족화와 가족화, 공적책임과 사적책임을 축으로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가족주의가 발현되는 양태로서 한국사회의 돌봄 제공 유형을 검토했다. 정리와 논의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내용과 함의를 개략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2. 가족주의를 둘러싼 이론적 논쟁

1) 가족주의(familism)야, 가족주의(familialism)야?

가족주의(familism)와 가족주의(familialism)를 구분하는 합의는 없는 듯하다.¹⁾ Esping-Andersen(1999)은 가족이 개별 시민의 복지의 주된 책임을 담당하는 것을 [familialism]으로 정의하는 반면 Valiente(2010)는 이를 [familism]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familism]과 [familialism]은 모두 가족주의라고 번역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familism]은 집단으로써 가족(the family)의 필요가 어떤 개별 가족구성원의 필요보다 우선되는 사회구조의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정의되고 있다(Neufeldt and Guralnik, 1997). 반면 “familialism”은 서구적 맥락에서 제도로서의 전형적 가족(the family)을 권장하는 이데올로기로 정의된다(Wikipedia, 2011).

두 개념 모두 전형적 가족을 중심으로 가족주의를 이해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 또한 분명하다. 구분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전자가 단위으로써의 가족의 이해를 강조했다면, 후자는 부, 모, 자녀로 구성된 서구의 전형적 가족 구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familism]이 단위으로써 가족의 이해가 개별 가족구성원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이해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면 [familialism]에서 전형적 가족을 강조하는 것은 가족 내 성별분업에 근거한 남성 생계부양자와 돌보는 자로서의 여성을 전제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Familialism]을 여성의 돌봄 책임과 가족(남편)에 대한 경제적 의존 문제로 접근한 Esping-Andersen(1999)의 입장도 가족 내 성별분업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상의 관점을 취하면 [familism]은 현대 한국사회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가족이해를 우선하는 가족주의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실제로 가족주의와 관련된 대부분의 학술 논의는 집단(또는 단위)으로써 가족을 유지하고 가족의 이해를

1) 'Familism'과 'familialism' 모두 가족주의로 번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둘을 구분해야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영문을 직접 사용했다.

증대시키기 위한 개별 가족구성원의 사회적 행위를 가족주의로 이해하고 있다(송재룡, 2002; 김혜영, 2003; 김승현, 2010). 그러나 가족의 이해를 도모한다는 것이 반드시 가족 내 성별분업을 전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familism]은 [familialism]과 구분된다. 전통적 성별분업을 전제로 전형적 가족의 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만약 불가피하게 우열을 가려야한다면 성별분업과 관련된 이해보다는 집단으로써의 가족의 이해가 우선된다. 한국 [familism]의 이러한 특성은 이문열의 대표적 출세작 『영웅시대』에 잘 묘사되어 있다(권유리아, 2007). 남성(남편)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성(아내)은 가부장권을 강화하는 주체가 되고, 남편을 대신해 가족의 이해를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여성에게 사실상 남편은 가족의 이해를 극대화하는데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중국 가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를 설명하는 울프의 자궁가족(uterine family)과 유사하다(Wolf, 1974:168). 여기서 [Familism]은 집단으로써 가족의 이해에 복무해야 한다는 가치가 가족 내 전통적 성별역할을 고수하는 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가치라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대부분의 한국과 서구 학계에서 [familialism]은 복지와 돌봄 정책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가족이 감당하고 있는 돌봄과 경제적 부양책임을 이야기할 때 [familialism]이라는 의미의 가족주의가 사용되고 있다(Leitner, 2005; Saraceno and Keck, 2010). 간혹 전형적 가족의 가치를 강조할 때 [familialism]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암묵적 성별분업을 전제로) 가족의 가족구성원(특히 부모의 자녀)에 대한 돌봄과 부양의 1차적 책임을 강조할 때 사용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1996년 미국의 복지개혁과 [familialism]을 둘러싼 논쟁에서 가족 가치를 강조할 때도 [familialism]은 가족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부양과 돌봄의 1차적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²⁾(Struening, 1996).

논의가 이와 같다면 결이 다른 지향점을 가진 [familism]과 [familialism]을 계속

2) 미국의 신가족주의(new familism)는 양부모가족의 쇠퇴에 대한 위기의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Struening, 1996). 신가족주의자들은 1950년대의 성별분업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중성적인 요구는 여성을 남성화시킴으로써 사적영역에서 돌봄의 위기를 야기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남성이 기저귀를 갈아줄 수는 있지만 전통적인 성별분업은 유지되어야 하며, 자녀의 경제적 부양의 1차적 책임은 부모(남성)이 져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족주의로 통칭해서 사용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서구에서 사용되는 [familism]이 전형적 가족(핵가족)을 상정하는데 반해 한국에서 [familism]은 전형적 가족만을 의미하기 보다는 권유리아(2007), 김태만(2000) 등의 분석처럼 전형적 가족의 범주를 넘어 보다 더 넓은 가족범주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서구적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familism]이 전형적 가족을 넘어, 경우에 따라 그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단지 한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친족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특성을 가진 남부유럽 국가들의 특성 또한 [familism]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Reher, 1998, Kalmijn and Saraceno, 2008:482, 재인용)³⁾.

이미 두 개념의 혼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두 개념을 분명하게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며, 두 개념이 내재하고 있는 속성 또한 배타적이 않은 부분도 상당하다. 그러나 개별 시민의 복지와 돌봄에 대한 1차적 책임자로서 가족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familialism]과 집단으로써 가족이 모든 사회의 근간이며, 집단으로써 가족의 이해가 개인과 사회 위에 위치한다는 [familism]은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특히 복지국가 논의에서 가족주의는 주로 앞서 언급한 [familialism]과 관련된 경제적 부양과 돌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국가와 시장의 역할이 무엇인가로 모아지기 때문에 [familialism]은 [familism]과 구분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논의에서는 [familism]을 가족주의로, [familialism]을 가족책임주의로 구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다시 정리하면 가족책임주의(familialism)는 가족 구성원의 돌봄과 경제적 부양에 대한 책임을 여성(모)⁴⁾ 또는 남성(부)에게 강제·제도화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가족의 이해를 최우선시 하는 가족주의(familism)와 구분하고자 한다.

3) 그러나 Kalmijn과 Saraceno는 [familism] 대신 [familialistic]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familism]과 [familialism]이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또 다른 사례이다.

4) 조모가 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조모는 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최적의 대리모라고 이해함으로써, 가족 내 성별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가족책임주의, 돌봄 그리고 복지국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족책임주의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복지와 관련해 가족책임주의는 개별 시민의 복지와 돌봄을 가족이 책임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Esping-Andersen, 1999:45). 복지국가 이념의 배후에 존재하는 이러한 가족책임주의는 시민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취약한 상태에서 가족이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책임지게 하는 이념으로 작용하고 있다(León, 2002:60). 이러한 가족책임주의와 복지국가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국가 복지가 취약하기 때문에 가족이 개인의 복지를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가족이 시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일 수도 있다. ‘알과 닭’의 논쟁처럼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논란이 되겠지만 개인의 복지와 관련해 국가와 가족이 대체재 관계에 있다는 가정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주로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부유럽 국가들에서 복지제공 주체로서 가족의 중요성과 상대적으로 미약한 국가의 역할을 설명할 때 쓰이는 논리이다. 그러나 가족과 국가가 대체재 관계에 있다는 명제를 뒤집어 보면 국가 복지(또는 시장을 통한 복지)가 확대되면 가족에 의존하던 복지는 약화되고 자연스럽게 가족의 돌봄 책임 또한 약화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정말 돌봄에 대한 가족의 책임은 복지국가의 확대 과정에서 소멸해가는 과도기적 현상일까? 이러한 논리를 구체적으로 따라가 보자. 가족책임주의가 미발달된 공적복지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국가 복지의 확대·발전 과정에서 복지제공 주체로서 가족이 국가로 대체되면서 가족책임주의는 자연스럽게 약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사회이론과 결합된 일반적 통념은 가족구성원에 대한 복지제공 주체로서 가족과 국가는 대체재 관계에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복지국가의 확대·발전은 가족연대를 약화시킴으로써 가족의 돌봄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Cox and Jakubson, 1995, Cox, 1987, Kalmijn and Saraceno, 2008:483, 재인용). Valiente(2010:129)는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책임주의⁵⁾가 여전히

5) Valiente(2010)는 familism 대신 familism을 사용했지만 Valiente 논의의 맥락상 개인의 복지와

스페인 복지국가의 특성으로 남아있지만, 아동돌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확대됨에 따라 가족의 역할은 점점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러한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가족책임주의는 복지국가의 확대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특성이고, 이러한 가족책임주의를 “과도기적 가족책임주의(transitional familialism)”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시점에서 가족이 가족구성원의 복지(여기서는 주로 돌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해당 복지국가의 발달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가족책임주의가 후쿠야마(Fukuyama, 1996:35)가 이야기하는 개인의 사회적 행위의 준거가 되는 습속으로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다. 돌봄(복지)을 가족이 책임지는 현상도 미발달된 복지국가의 특성에 불과한 것이며 복지국가의 확대에 따라 과도기적 가족책임주의는 약화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면 현재 한국에서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 책임은 가족(여성)이 감당하고 있지만 국가 복지의 확대과정에서 가족책임주의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물론 가족의 돌봄 책임이 완화되는 속도는 국가 복지의 확대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돌봄과 관련된 가족의 역할을 국가가 대체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가족책임주의를 이해한다면 일부 국내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가족책임주의는 한국만의 특성이 아닌 국가 복지가 지체된 대부분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가 확대된다고 해도 가족원에 대한 돌봄 책임이 여전히 가족에게 남아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럴 경우 가족책임주의는 앞서 언급한 “과도기적 가족책임주의”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돌봄 제공 방식을 결정하는 준거가 된다. 복지국가가 확대된다고 해도, 특히 돌봄 영역에서 공적개입이 증가한다고 해도 가족책임주의가 한 사회의 습속으로 존재하는 한 해당 사회의 돌봄 제공 방식은 가족책임주의의 영향에서 벗어 날 수가 없다는 논리다. 가족책임주의가 해당 사회의 돌봄 제공방식을 결정하는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 “준거적 가족책임주의(criterial familialism)” 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벨기에는 “준거적 가족책임주의”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아동보육시설에 대

돌봄을 가족이 책임지는 familialism을 의미하고 있다.

한 공적지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성별분업에 대한 벨기에 사회의 선호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과거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Leitner, 2005:424). 모가 자녀를 돌보아야한다는 이념이 지배적일 경우 공적보육시설을 확대해도, 즉 국가가 개입해도 돌봄 제공은 여전히 가족 또는 가족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1970년대까지 보육시설확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벨기에의 돌봄 제공방식은 1980년대 이후 세대 간 돌봄(조모가 돌보는 형태)과 모의 양육방식을 대신하는 대리모 돌봄(가정보육시설)로 대체된다(Leitner, 2005, 427; Morel, 2007). 이태리는 복지국가의 확대가 반드시 가족 돌봄에 대한 국가의 지원확대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준거적 가족책임주의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다. 2005년 현재 이태리의 GDP 대비 사회지출은 25.0%로 OECD 평균인 20.6%는 물론이고 사민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노르웨이의 21.6% 보다도 3.4%p나 높다(OECD, 2010). 하지만 가족과 관련된 지출은 GDP 대비 1.3%로 노르웨이(2.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OECD, 2008). 아동보육에 대한 지출로 범위를 축소해도 결과는 유사하다.

그러나 한 사회의 돌봄 제공 방식과 가족책임주의의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개별 시민의 복지(돌봄)에 대한 가족의 책임은 복지국가의 확대발전예 따라 약화될 수 있지만 그 방식은 해당 사회의 가족책임주의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국가의 돌봄 제공 방식은 돌봄의 대상(0세~2세 아동, 3세부터 취학 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Leitner, 2005)⁶⁾. 그리고 가족책임주의가 한 사회의 습속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가족책임주의가 항상 동일하게 해당 사회의 돌봄 제공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로 지금은 아동보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로 분류되는 노르웨이조차도 1960년대 말까지는 부모의 전적인 양육책임을 강조했고, 가정이 아동을 돌보는 최적의 장소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사회였지만 1990년대에 공적보육시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족책임주의는 가족의 돌봄 책임을 사회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Olk, 2010:13-4). 벨

6) 예를 들어, 스페인의 3-5세 아동의 공식보육비율은 98.5%에 이르지만, 3세 미만 아동의 보육비율은 37.5%에 그치고 있다(OECD, 2011).

기에 또한 초기에는 가족이 돌봄을 전담하던 사회에서, 1970년대에는 국가가 돌봄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로, 1980년대 중반이후에는 다시 가족의 직접적인 돌봄 역할을 지원하는 사회로 변화했다⁷⁾(Leitner, 2005). 즉, 가족책임주의는 고정된 이념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변화발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유동적이며 역동적 이념인 것이다. 더욱이 가족책임주의는 유무의 문제가 아니다. 현존하는 모든 복지국가에서 가족은 가장 중요한 돌봄 제공자이자라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은 가족책임주의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책임주의가 특정 사회의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발현되는 상이한 양태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한다.

3) 한국사회의 가족책임주의

보수주의 대륙유럽 국가로서 벨기에, 독일, 이태리는 모두 다 가족책임주의가 강한 복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Olk, 2010; Ray, Gornick, and Schmitt, 2010; Leitner, 2005). 그러나 돌봄을 분담하는 방식은 상이하다. 벨기에가 부·모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돌봄을 제도화했다면(Leitner, 2005), 독일은 2007년 이전까지 주로 유자녀 여성의 돌봄 책임을 강조하면서 돌봄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었다(Olk, 2010; Ray et al., 2010). 반면 이태리는 유자녀 여성의 돌봄에 대해 재정적 지원도 하지 않고, 부모의 다양한 선택에 대해서도 지원하지도 않는다(Fargion, 2010).⁸⁾ 이렇듯 세 국가 모두 가족책임주의 국가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세 국가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양태는 상이하다⁹⁾. 이는 기본적으로 세 국가에서 형성된 가족책임주의의 역사가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논의가 여기에 이르면 동

7) Leitner(2005)는 벨기에의 가족주의가 암묵적 가족주의-탈가족주의-선택적 가족주의로 변화했다고 주장한다.

8)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의 보육율은 100%에 달하지만 이는 여성의 돌봄 책임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보다 아동에 대한 조기교육의 목적이 강하다(Fargion, 2010). 실제로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은 부모의 근로시간 보다 짧다.

9) 세 국가가 왜 서로 다른 돌봄 제공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본 논의의 주제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구체적 분석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 가족책임주의를 사례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각국의 일부 사례를 제시했다.

아시아의 가족책임주의의 전형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 가족책임주의의 특성에 대해 궁금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매우 어렵고 지난한 논의가 필요한 주제이지만 여기서는 한국 가족책임주의의 특성을 개략함으로써 이후 돌봄이 제공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가족책임주의의 성격에 대해 탐문하고자한다. 한국의 특성은 여러 연구자들(김동춘, 2002; 송재룡, 2002)의 지적처럼 종교·사상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종교사상적 측면에서 유교는 부정적 의미를 가진 한국의 이기적 가족주의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유교이념 자체가 이기적 가족주의를 조장한 것은 아니다. 공맹(孔孟)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삼는 유교는 스스로 사사로운 이기심을 누르고 수련하는 수신(修身) 성격이 강한 사상이다. 유교의 핵심은 인(仁)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인은 극기복례(克己復禮), 수신을 통해 예(禮)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유교의 대표적 경전인 『논어』에서조차도 예가 무엇인지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예의 회복은 자신을 극복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쑤치시, 2011:18, 23). 이렇듯 유교에서는 개인과 가족의 이기심이 극대화된 이기적 가족주의는 보이지 않는다. 조선 성리학의 근간이 되는 송(宋)의 주자학도 종법을 통해 가문의 이익을 보장하는 수단이 아닌 종법을 통해 사(私)로 전락한 세상을 공(公)의 영역으로 되돌리기 위한 수단이었다(이승연, 2004:36). 가족에 대한 사랑을 천륜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천륜이 사사로운 영역인 내 가족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전체 사회로 무한히 확대됨으로서 사는 공과 대립하지 않고 하나가 된다는 유교적 이상을 꿈 꾸는 것이다.

이처럼 유교는 공적 대의를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했다(금장태, 1987, 윤사순, 1997, 김동춘, 2002:110-1 재인용). 그러나 유학에서 중시하는 예(禮)는 본질적으로 구분과 차이에 기반 한다는 점에서 차이와 불평등의 제도화를 전제하는(쑤치시, 2011:18-9)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성리학은 남과 여의 보편적 특성(理)은 같지만 드러나는 현상(氣)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둘의 구별은 불가피하고, 구별은 여성에 대한 차별로 나타난다¹⁰⁾(김덕균, 2005:118-9). 유교의 이러한 전통은 공적

10) 『맹자』에서는 무능한 남편에 대해 통곡하는 아내의 일화가 소개되는데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은 생계부양자이고, 아내는 피부양자(생계부양의 책임이 없는)라는 성별분업이 전

이해에 복무하는 사적영역으로써 가족과 가족 구성원에 대한 1차적 돌봄 책임¹¹⁾을 여성(가족)에게 부여하는 한국 가족책임주의의 종교적·사상적 근간이 된다.

남녀, 군신 등의 차이를 전제함으로써 불평등을 제도화하는 한계가 분명하지만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인을 가족을 넘어 전체사회로 확대해 사와 공이 통합되는 이상 사회를 꿈꾸었던 조선의 유교(성리학)가 어떻게 자기 가족만을 위하는 이기적 가족주의와 돌봄 책임을 가족(여성)에게 강제하는 가족책임주의로 변질된 것일까? 이만갑(1981, 김동춘, 2003:104 재인용)에 따르면 공적인 대의를 중시하던 유교가 일가(一家)를 의미하는 이기적 집단주의로 왜곡된 것은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다. 생산력과 상공업의 발달은 지배계층(양반)의 몰락을 가속화시켰고, 지배층은 이를 타개하고 구래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문벌을 중심으로 한 가족적 유대를 강화시킴으로써 공사 통합원리로서 종법을 통한 유교적 이상은 사라지게 된다. 더욱이 구한말과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공(公)이 일제와 등치되면서¹²⁾ 유교적 원칙을 지켜야할 대상은 사(私)(가족)로 제한된 것이다.

전통은 그 시대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현재의 산물이라는 진경환(2010:159)의 주장처럼 한국에서 유교적 이상은 일제치하라는 상황 하에 가족의 이해로 제한되는 가족중심의 새로운 전통으로 창조된 것이다. 유교적 이상이 반쪽짜리 가족영역으로 제한되면서 한국사회의 모든 행위는 가족의 이해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돌봄에 대한 가족책임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과 수탈이 극악해지는 1930년대 전시동원 체제에 접어들면서 공과 분리된 사로서 ‘가족’은 점점 일제군국주의에 복무하는 하는 단위로 편입된다. 구한말 국권 침탈시기, 여성의 권익과 건강이 독립운동을 위해 싸울 미래의 독립 전사를 길러내기 위해 찬양되었듯이, 1930년대 전시동원 체제하에서 여성의 돌봄은 또한 일제를 위해 헌신하는 황국신민을 길러내는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김경

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숙인, 2005:288).

11) 서양에서 가족돌봄이 주로 자녀돌봄에 맞추어져 있다면 동양에서 가족돌봄은 주로 노인돌봄을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다(이숙인, 2005:267) 그러나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돌봄의 초점은 노인에서 자녀로 이동했는데 이는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전근대적 가족윤리가 전형적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적 가족윤리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1930년대 말 이후 전시동원체제하에서 ‘공(公)’으로써 일제에 대한 충성요구는 더욱 거세어 졌다(김경일, 2004:57).

일, 2004).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한국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공과 분리된 사로서의 가족과 국가에 헌신해야하는 가족이라는 가족에 대한 모순적 요구¹³⁾는 변하지 않았다. 한국전쟁과 권위주의 정부를 거치면서 가족은 국가의 지원 없이 가족 스스로를 책임져야하는 동시에 국가발전이라는 대의에 복무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 없이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시켜야하는 주체가 되었다. 그리고 그 주된 책임은 강준만(2009)의 『어머니 수난사』에서처럼 언제나 여성, ‘어머니’의 몫이었다. 1987년 민주화항쟁으로 권위주의 정부는 물러났지만 세계적 신자유주의 파도 속에서,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족은 이제 국가 발전이 아닌 생존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했다. 권위주의 정권이 물러난 공간이 민주적 시민사회로 대체되지 못하면서 가족과 그 구성원은 오직 시장에서 자신의 힘으로만 각개약진(各個躍進)해야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다.

초등학교입학 전부터 시작되는 경쟁은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몰아넣고, 모성은 단순히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학업성적, 대학입시 더 나아가서 사회적 성공을 위해 헌신해야하는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새로운 “전일적(專一的) 모성”으로 재창조 되었다¹⁴⁾. 공과 분리된 사로서의 가족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하는 변형된 유교적 가족주의의 전통, 유교적 남녀의 구분에 근거한 성별분업의 전통과 개별 시민이 직면한 사회적 위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권위주의 정권 이래 지연되면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할 수밖에 없는 전일적 모성에 기반한 가족책임주의가 만들어진 것이다. 더욱이 근대화 과정에서 급격히 성장한 한국 개신교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유교를 대신해 성별분업과 성차별의 담

13) 국가는 가족에게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가족은 국가를 위해 미래의 ‘산업역군’을 양육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헌신해야하는 모순을 이야기한다.

14) 할아버지의 재력, 어머니의 정보력, 아버지의 무관심, 둘째의 희생이라고 표현되는 자녀의 4대 성공조건은 공적역할이 부재한 한국사회의 단면을 아주 정확히 보여준다. 당대의 부를 통해서는 엄청난 사교육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확대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할아버지의 재력’, 어머니가 단순히 돌보는 차원을 넘어 아이들의 학원정보, 일정관리, 네트워크 관리 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의 새로운 모성으로써 ‘어머니의 정보력’, 자녀양육과 관련된 철저한 성별분업의 예를 보여주는 ‘아버지의 무관심’, 장자 우선이라는 전통적 유교적 가치를 보여주는 ‘동생의 희생’은 그야말로 자녀양육과 관련된 가족책임주의가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는지를 아주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다.

론을 옹호·유포하는 주체가 되었다(김정희, 1997:115). 종교는 유교에서 개신교로 바뀌었고, 유교적 의식을 미신이라고 비난하는 개신교가 유교적 성별분리에 기반한 사상을 재생산하는 주체가 되는 역설을 연출하고 있다.

다른 가족의 자녀들과 생존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해야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자녀에게 최선의 돌봄을 제공하는 유일한 사람이 ‘어머니’라는 믿음은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모두가 경쟁자인 상황에서 부모자식을 제외하고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현실은 출산 후 일을 그만둔 여성 중 직접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모가 최고의 양육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조사결과로 뒷받침된다.¹⁵⁾ 실제로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의 교육에 전념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는 여성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렇듯 한국에서 자녀양육의 책임을 가족에게, 여성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성별분업에 근거해 여성이 자녀 돌봄의 책임을 전담한다는 의미에서 단순한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된 모습이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 어머니가 자녀를 돌본다는 것은 구한말과 일제식민지, 한국전쟁,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체득된 생존을 위한 가족이기주의가 개신교의 성역할분리, 시민의 복지에 대한 국가 역할의 부재와 결합되면서 자녀의 생존을 위한 지금 모습의 ‘가족책임주의’로 고착화된 것이다. 각종 시험, 대학진학률, 사회 곳곳에서 일부 여성의 성공적 사회진출이 늘고, 아동보육비율과 양육지원제도는 점차 확충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여전히 낮고, 생애주기에 따른 취업곡선이 여전히 M자 곡선을 그리는 이유는 한국사회가 여성에게 “직접 돌보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강제”하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보육시설을 늘리고, 양육지원(육아휴직 등)을 확충한다고 해서 가족의 직접책임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아이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추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회에서 자신의 자녀를 공적영

15) 첫 자녀 출산 시 일을 그만 둔 여성의 44.8%가 직접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였다고 응답했고, 적당한 시설을 찾지 못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26.4%였다. 여기서 적당한 시설이란 모의 양육을 대신할 정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결국 자신(모)이외에는 자녀에게 최선의 돌봄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그만 둔 비율이 무려 71.2%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삼식·최효진·서문화·박세경·윤홍식·진미정, 2010).

역에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키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다른 사람과 같다는 것은 경쟁에서 낙오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성이 전일적 모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가족은 남편의 수입만으로도 안정적 생활과 엄청난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소수에 국한 된다는 점이다. 일본의 가족주의에 관한 연구처럼(Aoki and Aoki, 2005) 실제 소수의 가족만이 가족책임주의를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가족책임주의는 젠더적 특성과 함께 사회계층적 특성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3. 가족책임주의를 통해 본 가족정책의 유형화

그러면 가족책임주의는 어떻게 한 사회의 돌봄 제공 방식과 관련되는 것일까? 가족책임주의를 중심으로 가족정책(돌봄 제공 방식)을 유형화시키는 것은 한 사회의 돌봄 제공 방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가족책임주의의 유형화는 왜 특정 돌봄 정책이 어떤 사회에서는 지배적인데, 다른 사회에서는 지배적이지 않는지를 이야기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책임주의를 통해 가족정책(돌봄 제공 방식)을 유형화한다는 것은 특정한 돌봄 제공 방식을 배타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 사회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은 다양한 형태가 혼합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웨덴은 OECD 국가들 중 아동 돌봄의 공적 사회화가 가장 잘 이루어진 국가이지만 가족의 직접 돌봄에 대해서도 관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부모휴가를 전일제급여방식(FTE, Full-time equivalent)¹⁶⁾으로 재계산하면 스웨덴의 부모휴가기간은 30.9주(OECD, 2011)로 OECD 국가들 중 동유럽 국가들을 제외하면 가족책임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독일(40.6주)과 함께 가장 관대하다(부록 표 1 참고). 이로 인해 가족책임주의를 준거로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을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직접적 돌봄 책임을 완화하는 아동보육정책과 부·모의 직접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유형화에 담기 위해서는 탈가족화와 가

16) 한국의 FTE를 계산하면 52주에 급여기간에 급여 대체율 40%를 곱한 20.8주가 된다. 100% 임금대체를 받는다면 20.8주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이 된다는 것이다.

족화 개념과 두 개념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탈가족화가 공적분담 방식만이 아닌 사적분담 방식(시장)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점과 부·모의 직접양육에 대한 국가별 지원수준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유형화에 대한 준거: 탈가족화와 가족화

(1)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 1999:51)은 탈가족화¹⁷⁾를 “가구의 복지와 돌봄 책임이 국가 또는 시장을 통해 완화되는 정도”로 정의했다. 이런 탈가족화에는 차원이 다른 두 의미가 내재해 있다(윤홍식·송다영·김인숙, 2010:96-7). 하나는 개인(여성)이 가족 또는 결혼관계로부터 독립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의 돌봄 노동을 탈가족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에스핑-앤더슨과 함께 탈가족화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리스터(Lister, 2000)도 탈가족화를 개별 시민이 결혼관계, 가족관계, 가족 내 돌봄 노동 수행과 무관하게 유급노동이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적절한 생활을 보장받는 정도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러한 탈가족화는 탈상품화가 유급노동만 고려하고 가구 내 무급노동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개념화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에스핑 앤더슨과 리스터의 탈가족화가 무급노동보다는 여성을 중심으로 개념화되었다는 점이다.

일견 여성을 포괄하는 것과 무급노동을 포괄하는 것은 차이가 없어 보인다. 결과적으로 여성이 무급노동의 대다수를 담당하기 때문에 여성을 고려하는 것이 곧 무급노동을 고려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급노동을 여성이 담당한다는 것은 성별분업의 현상적 결과이지 복지국가 논의에서 무급노동을 고려한다는 것과 등치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주의자들의 비판은 탈상품화를 중심으로 복지국가를 유형화함으로써 여성이 복지국가 논의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을 비판하

17) 앞서 논의한 것에 따르면 탈가족책임화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새로운 용어가 기존논의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탈가족화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하지만 여기서 탈가족화란 가족의 돌봄책임을 완화한다는 의미에서 탈가족책임화를 의미한다.

는 것이 아니다. 비판의 초점은 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급노동이 복지국가 논의에서 배제된 것에 맞추어져 있다. 왜냐하면 돌봄으로 대표되는 재생산 노동은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과 함께 자본주의를 지속가능하게 기본 축이기 때문이다.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급 돌봄 노동 없이 어떻게 자본주의가 지속가능하겠는가? 이러한 인식에 근거한다면 탈가족화는 탈상품화와 병행되는 개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탈상품화가 유급노동과 관련된 개념이라면, 탈가족화는 무급노동과 관련된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탈상품화가 유급노동을 수행하지 않아도 적절한 소득을 보장 받는 수준을 의미한다면 탈가족화는 무급노동(돌봄)을 수행하지 않아도 적절한 돌봄을 보장 받는 수준을 의미해야 한다(윤홍식 외, 2010). 그래야 무급(돌봄)노동이 유급노동에 종속되는 개념이 아닌 독립적 개념으로 설 수 있고, 복지국가 분석이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두 축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그런데 에스핑 앤더슨의 탈가족화 개념에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 정도’를, 리스터는 여성이 유급노동 또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적절한 생활을 보장받는 정도를 포함시킴으로써 탈가족화와 탈상품화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탈가족화에 ‘소득보장’을 포함시킴으로써 현상적으로는 탈상품화가 다수의 여성을 복지국가 논의에서 배제하는 문제를 무마했을지 모르지만 무급 돌봄 노동을 유급노동과 동등하게 위치 지우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더욱이 탈상품화와 양립해야 하는 탈가족화가 탈상품화를 보완하는 개념이 되었다. 말이 보완된다는 의미이지 남성의 경제적 독립을 보장하는 복지국가의 역할과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보장하는 복지국가의 역할을 상이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남성에게는 탈상품화를 적용하고, 여성은 남성과 상이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탈가족화를 통해 (남성에게 적용되는 탈상품화의 목적인) 시민으로써 독립성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탈가족화는 무급노동을 대표하는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탈상품화에 종속되는 개념이 되고, 무급노동 또한 유급노동에 종속되는 개념이 된다. 예를 들어, 에스핑 앤더슨의 탈가족화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인 아동수당은 급여수준 만큼 부 또는 모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아도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 받는다는 점에서 탈상품화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결론이 나지 않은 논쟁이지만 남성 시민권과 여성 시민권의 기반이 상이하다는 탈가족화의 전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¹⁸⁾ 이렇듯 에스핑 앤더슨과 리스터로 시작된 탈가족화는 ‘여성의 독립’에 초점이 맞추어짐으로써 소득보장과 돌봄의 사회화라는 서로 다른 목적이 혼재된 모호한 개념이 되었다.

이러한 혼란을 반영하듯 탈가족화는 연구자들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¹⁹⁾. Bambra(2004)의 탈가족화 지표는 여성의 상대적 노동시장참여율, 모성휴가 기간과 급여수준, 여성의 평균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Guo와 Gilbert(2006)는 탈가족화의 세 가지 핵심 지표로 “가족서비스 지출규모, 3세 이하 아동의 공적아동보육비율, 노인에 대한 재가서비스 제공비율“을 적시하고 있다. Leitner(2005)는 탈가족화(주의)를 아동돌봄의 사회화(보육시설)문제로 접근했다²⁰⁾.

여기서는 이러한 논의에 근거해 탈가족화를 탈상품화와 병행하는 대등한 개념으로 정의하기 위해 탈가족화를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 책임이 국가 또

18) 그래도 굳이 차이를 주장하고 싶다면 탈상품화가 노동시장에서의 성취 또는 시민권에 기반 한 권리로 보장되는 것인데 반해 아동수당은 가족 내 아동유무라는 인구학적 특성 또는 시민권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둘 다 유급노동을 하지 않고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탈상품화의 목적과 차이가 없다.

19) 유족연금은 이러한 혼란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유족연금은 수급자의 노동시장에서 성취를 반영한 급여권리가 아니라 배우자의 권리로부터 파생된 권리이다. 즉 결혼관계, 가족관계에 기반 한 권리이다. 그렇다면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을 낮추는 것은 탈가족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가족관계에 기반 한 권리를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유족연금 수준이 높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고도 적절한 수준의 생활보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탈상품화 수준이 높다는 것이 아닌가? 수급자가 직접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얻어지는 권리, 즉 상품화를 통해 파생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탈상품화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럼 어떤 정책인가? 탈가족화에 반대되는 정책인가? 유족연금 급여를 낮추거나 폐지하면 배우자로부터 파생된 권리를 통해 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족연금의 수급예정자가 직접 노동시장에 참여할 압력이 높아져 이를 상품화 정책이라고 보아야 할까? 아니면 Leitner(2004, Woods, 2006 재인용)의 표현처럼 (독일에서) 유족연금을 낮추는 정책결정이 탈가족화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의미에서 “부정적 탈가족화”라고 표현했는데, 탈가족화가 가족관계에 기반 한 경제적 의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는 Lister와 Esping-Andersen의 정의에 따르면 오히려 탈가족화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20) 이렇듯 탈가족화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를 이루어지고,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국내 일부 연구자들은 탈가족화를 Esping-Andersen과 Lister가 정의한 고정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고, 두 사람의 개념정의에서 벗어난 탈가족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의 시도는 탈가족화에 대해 잘못된 해석이라고 치부하고 있다. 개념이 고정불변의 것이라면 사회과학에서 어떻게 새롭고 창의적인 시도들이 가능하겠는가? 물론 개념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정의하는 것은 문제이다. 새로운 조작적 개념은 새로운 조작적 개념이 필요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에 대한 비판은 왜 연구자가 새로운 시도를 했는지에 대한 의도를 이해하고, 이러한 의도에 의해 정의된 개념의 논리적 타당성과 기존개념과 비교에서 가지는 장단점에 대한 비판이 되어야지 Esping-Andersen은 이렇게 정의했다, Lister는 이렇게 정의했다는 식의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는 시장을 통해 완화되는 수준으로 정의했다(윤홍식 외, 2010). 그러나 문제는 탈가족화는 탈상품화와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탈상품화는 대상범위와 수준에 대한 측정을 통해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의 대상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몇%인지는 탈상품화의 범위를 측정하는 유력한 지표이다. 수준(質)의 문제는 지급되는 급여가 실직 전 통상임금의 몇%를 대체해주는지, 수급기간과 대기기간은 얼마인지 등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 탈가족화 역시 대상범위는 쉽게 측정이 가능하지만, 수준(질)을 어떻게 측정할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3세 미만 아동의 공적보육비율을 통해 아동돌봄의 탈가족화의 범위는 측정할 수 있다. 수준(질)의 문제는 교사 대 아동비율, 교사의 교육수준 등 통해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탈가족화의 질을 담보하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설명 양적지표가 동일하다고 해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육시설과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공공시설의 단순 비교는 해당 사회의 탈가족화 현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탈가족화는 시장과 국가를 통해 모두 가능하지만 탈가족화를 준거로 복지국가를 유형화 할 때는 반드시 민간중심의 탈가족화와 공공중심의 탈가족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탈가족화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람(교사)과 사람(아동)의 관계의 질을 측정해야하는데, 이를 계량화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탈가족화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탈상품화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탈가족화 지표는 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탈가족화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또 하나의 독립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탈가족화의 대상범위만을 검토했다.

(2) 가족화(familialization)와 가족책임주의

다음은 가족화를 둘러싼 논란이다. 사실 탈가족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와 비교하면 가족화(familialization)에 대한 논의는 관심 밖에 있다. 국내외 문헌에서 가족화에 대한 논의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대신 가족책임주의(familialism)를 탈가족화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함으로써(Wood, 2006) 가족화에 대한 논의를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족화와 가족책임주의는 명백히 차원이 상

이한 개념이다. 가족책임주의가 가족화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먼저 가족책임주의가 가족화와 왜 다른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가족책임주의는 특정 복지국가에서 가족원에 대한 1차적(또는 가장 중요한) 돌봄 책임을 가족이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원이 가족원에 대한 1차적 돌봄책임을 담당하지 않는 사회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족책임주의를 여부의 문제로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돌봄의 탈가족화 수준이 가장 높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에서도 가족은 돌봄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실제로 노인 중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은 스웨덴과 덴마크가 각각 21.0%, 24.6%로 가족책임주의가 강하다고 알려진 이태리(12.4%)와 스페인(14.1%)을 압도하고 있다(Kalmijn and Saraceno, 2008: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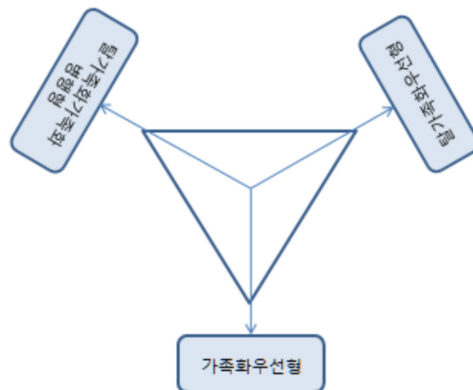
그렇다면 가족책임주의에 대한 이해는 가족원이 가족원에 대한 1차적 돌봄 책임을 지고 있는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사회(국가)가 가족원이 가족원에 대해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가족책임주의를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드(Wood, 2006)처럼 가족책임주의를 탈가족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 남성에게 대한 탈상품화 정책을 통해 전통적 가족의존성을 강화 또는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가족책임주의는 탈가족화와 대립되는 개념이기 보다는 개별 복지국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 아동돌봄과 관련된 가족책임주의는 부·모가 소득상실 없이 어린자녀를 집에서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대한 육아휴직(부모휴가)급여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질이 담보되는 공적보육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그리스에서 가족책임주의는 국가의 지원 없이 개별 가족이 어린자녀에 대한 돌봄을 책임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관점에서면 가족화는 가족원이 가족원을 직접 돌보는 행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개념이다. 라이트너(Leitner, 2003, 2005)는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책임주의를 분석한 대표적 연구자이다. 라이트너(Leitner, 2003)는 가족책임주의의 특성에 따라 산업화된 복지국가들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유형화의 준거는 가족의 돌봄 책임을 사회화시키는 정도와 가족 돌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수준(여부)이다. 먼저 명시적 가족책임주의는 국가가 의도적으로

가족원의 가족원에 대한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이고, 암묵적 가족책임주의는 국가가 가족 돌봄에 대해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선택적 가족책임주의는 국가가 가족의 직접 돌봄과 탈가족화를 모두 지원하는 경우이며, 탈가족책임주의는 국가가 돌봄의 탈가족화는 지원하지만 가족화는 지원하지 않는 경우이다. 라이트너의 의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유형화는 모든 사회에는 돌봄 제공 방식을 결정짓는 특수한 가족책임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가족화는 가족책임주의와 등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다양한 방식 중 하나로 가족원이 가족원을 직접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탈가족화가 시장과 국가라는 두 가지 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듯이 가족화 또한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는 국가가 가족원의 가족원에 대한 돌봄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공적 가족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 돌봄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도 없고, 국가가 가족 돌봄을 대신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아 가족 돌봄만이 유일한 대안인 (강제된) 사적 가족화 방식이다.

2) 가족책임주의에 기반 한 유형화

[그림 1] 탈가족화와 가족화를 통한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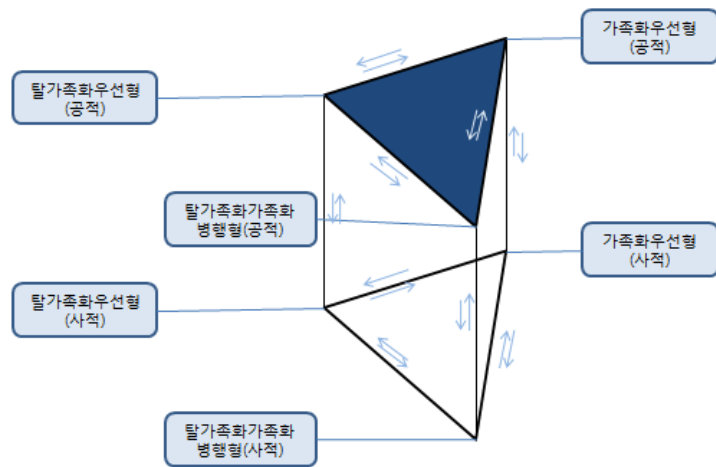


앞서 제시된 논의를 통해 우리는 가족책임주의가 한 사회의 돌봄 제공방식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족책임주의의 유형에 따른 돌봄의 제공 방식은 두 축의 조합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축이고, 다른 하나는 탈가족화와 가족화가 공적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사적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구분하는 축이다. 먼저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축을 통한 유형화를 살펴보자. 여기서 핵심은 해당 사회(국가)가 가족원의 가족원에 대한 직접 돌봄을 지원하는 것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가족원의 돌봄 책임을 탈가족화하는 방식을 우선할 것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이때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형태는 탈가족화 우선형, 가족화 우선형, 탈가족화·가족화 병행형이다(윤홍식 외, 2010).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각의 유형이 배타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삼각형 위의 연속선상에 위치하며,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어떤 국가가 가족화 우선형으로 분류된다는 것이 해당 국가에서 가족화가 유일한 돌봄 제공 방식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는 핵심준거는 가족화 정책이 탈가족화 정책의 대체재인지 보완재인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가족화가 탈가족화를 보완하는 경우라면 탈가족화 우선형이 되고, 탈가족화가 가족화를 보완하는 경우라면 가족화 우선형이 된다. 만약 탈가족화와 가족화가 병행된다면 탈가족화·가족화 병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둘 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해당 사회에서 돌봄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의 문제로 귀착된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성’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와 관련 있다. 특정 사회가 여성의 정체성을 노동자에 기반 한다면 해당사회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양상은 탈가족화우선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어머니가 해당 사회에서 여성을 규정하는 1차적 정체성이라면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형태는 가족화우선형일 가능성이 높다. 노동자와 어머니라는 이중적 정체성으로 여성을 규정하는 사회라면 탈가족화·가족화 병행형의 모습을 띠 가능성이 높다. 단 이 경우 탈가족화와 가족화 정책이 병행되어 나타나는 단위는 개별 여성이 아니라 계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계층에게는 가족화 정책을 이용하는 것이 지배적인 규범이지만 다른 계층에게는 탈가족화가 지

배적인 규범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 가지 유형만으로는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다양한 형태를 설명하기 어렵다. 우드(Wood, 2006)의 주장처럼 시장과 국가에 의한 탈가족화는 상이하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소득계층에 따라 시장에서 탈가족화 서비스의 구매 여부가 결정되는 미국의 방식은(Wood, 2006) 보편적 권리로 모든 아동들에게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탈가족화 방식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그림 2] 가족책임주의의 유형화: 공적·사적책임의 가족화와 탈가족화



가족화도 마찬가지이다. 가족(모)이 자녀를 돌본다는 점에서 독일과 그리스는 유사하지만 모의 돌봄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독일, 담론만 있고 국가의 지원이 거의 없이 그리스는 구분되어야 한다. 즉 세 가지 유형은 다시 탈가족화와 가족화가 공적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적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따라 구분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적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탈가족화는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가족화는 국가의 지원 없이 가족이 직접 돌봄을 감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를 [그림 1]과 조합하면 [그림 2]와 같이 6개의 유형화가 가능해진다. 세 가지 유형은 공적책임 여하에 따라 각각 두 개의 유형으로 세분된다.

특히 가족화 우선형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적책임과 사적책임을 기준으로 세분하면 같은 가족화우선형 국가라고 하더라도 공적 가족화가 중심인 국

가와 사적 가족화가 중심인 국가를 구분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구분 방식은 가족책임주의의 발현 양태의 젠더관계를 더 명확하게 드러낸다. 공적 가족화의 경우 국가의 지원이 남성의 돌봄 참여를 제도화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지원은 전통적 성별분업에 근거한 공적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현실과 사적 가족화의 경우 국가의 지원이 부재하기 때문에 여성이 가족(주로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사적 가부장제를 지속시키는 현실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다. 더불어 본 유형화를 적용하는데 전제해야 할 것은 개별 국가가 특정 유형에 고정되기 보다는 [그림 2]의 화살표가 움직이는 것과 같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새로운 유형화 시도가 가지는 특성과 유형의 전형적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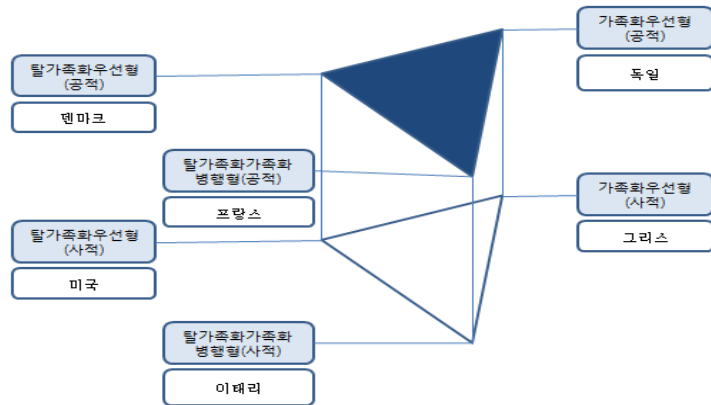
[그림 2]의 유형화는 가족책임주의의 다양한 발현 형태를 연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라이트너(Leitner, 2003)가 제시한 유형 중 선택적 가족책임주의는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여성의 정체성은 어머니와 노동자에 기반 하는데 반해(Morel, 2007) 덴마크에서는 노동자가 여성을 규정하는 1차적 지위를 갖는다(Emer다, 1998). 또한 덴마크에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부모휴가로 인해 부모휴가는 보육시설의 보완적 정책인데 반해 프랑스에서는 부모휴가 기간이 3년에 가까워 부모휴가는 보육시설의 보완재로 보기 어렵다. 명시적 가족책임주의도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 명시적 가족책임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독일의 3세 아동보육비율은 매우 낮지만 부모휴가는 관대하다. 반면 같은 명시적 가족책임주의 국가인 네덜란드의 부모휴가는 무급이지만 3세 미만 아동의 보육비율은 55.9%로 덴마크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네덜란드에서 가족책임주의의 발현 양상은 탈가족화가 우선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독일에서는 가족화가 우선하는데도 이 두 국가를 하나의 범주로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양상을 탈가족화우선형, 가족화우선형, 탈가족화·가족화병행형에 시장형과 미발달형을 포함해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윤홍식 외(2010)의 문제의식은 본 분석과 유사하지만 공적책임과 사적책임의 차이를 구분하

지 못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다. 특히 그리스와 한국을 미발달형으로 구분함으로써 가족책임주의를 앞서 언급한 과도기적 가족책임주의로 이해했다는 점은 중요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명백히 복지국가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양태를 이론화한 것은 아니지만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라 복지국가를 분류한 경우도 개별 복지국가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양태를 보여주기에 적절하지 않다. 대표적으로 세인즈베리(Sainsbury, 1999:78)는 복지국가를 젠더 이념에 따라 남성생계부양자, 젠더역할분리, 개별소득자·양육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류는 한 사회의 돌봄 제공 방식인 탈가족화와 가족화가 공적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적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를 가진다. 또한 가족책임주의가 탈가족화를 중심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가족화를 중심으로 나타나는지도 구분하기 어렵다. 더욱이 라이트너, 세인즈베리, 윤홍식 외의 분류는 각각의 유형을 배타적으로 구분했다는 점에서 한 사회의 돌봄 제공방식을 이해하는데 적절한 접근법이 될 수 없다.

[그림 3] 가족책임주의의 전형적 사례²¹⁾



21) 가족책임주의가 돌봄 제공방식에 발현되는 형태는 돌봄 대상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 돌봄의 탈가족화 정도는 서구유럽 국가들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3세 미만 아동 돌봄의 탈가족화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노인과 아동 돌봄이 제공되는 방식도 차이가 나타난다(Kalmijn and Saraceno, 2008 참고). 본 연구에서는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적용했으나 이러한 분류방식을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과 관련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6가지 유형의 전형적 국가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보다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본 논의 목적은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형에 가장 가깝다고 판단되는 국가만을 선정했다. 먼저 탈가족화우선형을 보자. 덴마크는 대표적인 탈가족화 우선형 국가이다. 덴마크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부모휴가 급여를 통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직접 돌봄을 지원하지만 부모휴가 기간은 부·모 각각에게 최대 24주를 넘지 않는다. 이는 부·모 모두 일을 하고 비공식적 제공자(할머니,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자녀가 만3세가 될 때까지 최소한 2년6개월 이상은 보육시설을 이용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화는 탈가족화의 보완재이지 대체제가 아닌 것이다. 실제로 덴마크의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율은 2008년 현재 65.7%로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OECD, 2011).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덴마크에서 여성은 어머니이기 이전에 노동자이다. 반면 미국은 대표적인 사적 탈가족화우선형 국가이다. 연방정부차원의 유급 부모휴가가 없기 때문에 가족화는 처음부터 탈가족화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 또한 저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구는 시장에서 보육서비스를 구매해야한다는 점에서 시장을 통해 탈가족화가 이루어지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적 가족화 우선형은 가족화를 지원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관대한 반면 탈가족화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경우이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부모휴가는 동유럽국가들을 제외하면 OECD 국가들 중 가장 관대한 편이다. 부모휴가 기간은 148주로 폴란드를 제외하고 가장 길며, FRE 부모휴가 기간 역시 동유럽 국가들을 제외하면 40.6주로 가장 길다(부록 표 1 참고). 반면 앞서 언급했듯이 3세 미만 아동보육비율은 17.8%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편이다. 보육시설이 부모휴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독일에서 어머니는 여성에 대한 1차적 규정성을 갖는다. 그리스에서도 어머니는 여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Kallinikaki, 2010) 부모휴가는 무급 30주에 그치고,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비율은 15.7%로 오스트리아와 함께 가장 낮다. 그리스는 아동에 대한 가족의 직접 돌봄을 강조하지만 무급 부모휴가와 같이 공적 지원 없이 가족이 가족원을 돌봐야하는 사적 가족화우선형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 공적 탈가족화·가족화 병행형은 프랑스이다. 프랑스의 부모휴가 기간은 143.5주로 독일과 유사한 수준이며, FRE 부모휴가기간도 27.8주로 긴 편이다(OECD, 2011).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비율도 42.0%로 높다. 이처럼 프랑스는 가족화와 탈가족화 수준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와 어머니라는 여성의 이중적 정체성을 반영한다. 국가가 부·모의 직접양육과 시설보육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이 이 유형의 특성이다. 사적 탈가족화·가족화 병행형의 대표적 사례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부모휴가에 대한 공적지원은 있지만 그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야하고,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아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에 대한 이중적 정체성(모성과 노동자성)과 보육시설이 민간 또는 시장을 통해 제공되어야 하는데 유럽국가들 중 이런 조건에 맞는 국가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태리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가장 근접한 국가로 보인다.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비율은 29.2%로 중간 수준이고, 부모휴가 기간도 26주에 그치며, 소득대체율도 30%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태리에서 가족은 사적영역으로 간주되어 국가의 지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Mínguez, 2006) 가족화와 탈가족화는 가구의 사적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4. 가족책임주의 유형을 통해 본 한국의 돌봄 제공방식

한국사회에서 가족책임주의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먼저 탈가족화 정책을 보자. 3세 미만 아동의 보육비율은 37.7%로 OECD 국가들 중 중간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대부분은 민간시설이다. 미국처럼 아동보육시설이 시장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보육시설은 법정 보육비 이외에 특별활동비, 기타 잡부금 등을 통해 부분적이지만 이윤을 추구하고 있고, 일부시설은 권리금을 주고받으며 매매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정부에 들어서 시장형(자율형) 보육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명목상 규제되고 있는 보육료 상한제조차 폐지될 예정이다. 부모휴가(육아휴직)로 대표되는 가족화 정책도 기간과 급여수준은 OECD 국가들 중 중하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그 대상이 제한

적이어서 대부분의 취업 부·모는 부모휴가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용대상 노동자 중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비율은 9.0%에 불과하다(홍승아·이미화·김영란·유계숙·이영미, 2009). GDP 대비 모성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지출비율도 2005년 현재 0.009%로 유급 육아휴직을 제도화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이다(OECD, 2011). 가족화를 위한 명목적 제도설계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공적지원을 수반한 가족화는 매우 취약하다.

협소한 육아휴직 대상자와 낮은 급여수준은 한국에서 발견되는 가족책임주의의 양태가 낮은 수준의 탈가족화우선형에 가깝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더불어 가족화와 탈가족화 모두에서 공적주체 보다는 사적주체가 돌봄 제공의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면 한국은 미국과 유사한 사적 탈가족화 우선형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다만 이명박정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한 아동양육수당의 확대는 가족화에 대한 공적지원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후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공되는 아동양육수당이 확대된다면 명백히 보육시설의 대체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견되는 양태가 탈가족화우선형에서 탈가족화·가족화병행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프랑스와 같이 한국에서도 탈가족화·가족화양립형으로의 전환은 돌봄 제공 방식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견되는 양태가 계층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저소득층은 아동양육수당을, 중간소득층은 민간보육시설을, 고소득층은 시장형 보육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아동 돌봄의 제공방식이 소득계층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 계층 간 차이를 확대할 것이다.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해도 지금 한국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견되는 양태가 ‘(사적) 탈가족화우선형’이라는 주장은 일반적 예상과 다르다. 성별차이에 근거한 유교적 전통이 남아있고, 보수적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성별분리가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이 있어야 할 자리는 여전히 ‘가족’이라는 관념이 남아있다. 실제로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 따르면 전통적 성역할 분리를 지지하는 기혼여성의 비율은 65.8%, 미혼여성은 67.2%로 나타났다(이삼식·신인철·조남훈·김희경·정윤선·최은영·황나미·서문희·박세경·전광희·

김정석·박수미·윤홍식·이성용·이인재. 2005: 273, 277). 연령에 따른 차이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0~44세 기혼여성의 65.4%가 전통적 성역할 분리에 대해 지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유교적 전통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간주되는 20~24세 기혼여성도 65.7%가 성역할 분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에서 여성이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는 전통적 가족책임주의가 연령과 관계없이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렇듯 전통적 성역할 분리가 지배적인 사회라면 당연히 가족이 가족원에 대한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화우선형이 돌봄 제공방식의 지배적인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가족책임주의는 탈가족화를 우선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왜 지배적인 관념과 실제 정책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입장에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괴리’는 과도기적 가족책임주의와 준거적 가족책임주의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과도기적 가족책임주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복지수준, 특히 가족과 관련된 복지가 맹아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입장에서 가족 돌봄을 대신할 주체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2007년 현재 가족에 대한 GDP 대비 공적지출규모(현금, 현물, 조세지원)는 0.57%로 OECD 33개 국가들(평균 2.23%) 중 최하위이고, 경제수준이 한국보다 낮은 칠레(0.81%)의 2/3에 불과하다(OECD, 2011).

그러나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해서 전통적 성역할 분리라는 문화적 습속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벨기에의 사례에서 보듯 돌봄 제공방식과 관련된 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는 돌봄에 대한 공적역할의 확대를 일정 수준에서 제어하게 되는데, 이는 가족책임주의가 준거로서 한 사회의 돌봄 제공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은 확대될 수 있지만 그 방향은 한국사회의 성역할 분리 전통과 결합되어 가족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동양육수당의 제도화이다. 가족정책 전문가들은 아동양육수당이 성역할 분리를 강화해 여성의 지위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여성들의 아동양육수당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사실은 준거적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경쟁을 조장하고 강권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자녀가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서 요구되는 “전일적 모성”은 전통적 성역할 분리가 근대적 성역할 분리로 변형되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가족의 직접 돌봄에 대한 한국사회의 요구는 당분간 강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돌봄 제공 방식이 가족화우선형으로 이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가족화우선형, 특히 공적 가족화우선형은 높은 수준의 공적지출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대표적 (공적) 가족화우선형인 오스트리아의 경우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규모가 GDP대비 2.15%로 한국의 0.02%의 무려 108배에 이른다(OECD, 2011). 현재 한국의 GDP 규모로 추정하면 대략 22조원을 가족을 위한 현금 급여만으로 지출한다는 것인데,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더욱이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남성 혼자만으로는 가족의 안정적 생계부양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남성일인생계부양자가구가 빈곤에 처할 가능성은 이인생계부양자가구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Yoon, 2010). 가족에 대한 공적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유일한 선택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이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이 지고 있는 돌봄 책임을 사회화 시킬 수밖에 없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양상은 “전일적 모성”이라는 새로운 모성에 대한 요구와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을 최소화할 위해 민간중심의 보육시설확대와 낮은 수준에서 가족화에 대한 지원이 함께 나타나면서 이태리와 같은 (사적) 탈가족화·가족화 병행형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 정리와 논의

가족주의를 둘러싼 논의를 통해 본 글은 한 사회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양태로서 돌봄 제공방식의 유형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했다. 먼저 국내외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가족주의와 가족책임주의를 구분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본 연구는 가족책임주의가 부분적으로 복지국가의 미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과도기적 가족책임주의), 한 사회의 돌봄 제공방식을 규정하는 준거(준거적 가족책임주의)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족책임주의가

돌봄 제공방식을 통해 발현되는 양태를 탈가족화와 가족화, 공적책임과 사적책임이라는 두 축을 통해 6가지의 전형적 유형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논거 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면 한국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양상은 단순히 복지국가의 미발달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습속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족책임주의가 한국 사회의 돌봄 제공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사회가 아무리 돌봄과 관련해 탈가족화의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해도 한국사회가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돌봄 제공방식과 유사해 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사회에서 아동 돌봄과 관련된 소위 친복지진영의 숙원(宿願)인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해서 아동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진행되더라도 가족이 직접 아동의 돌봄을 책임지려는 요구를 변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더구나 서구와 달리 자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을 요구받는 “전일적 모성신화”가 규범이 되어가는 한국사회에서 공적지원의 확대를 통해 모든 아동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종이에 쓰여 있는 이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공적보육시설의 확대가 부당하게 여성에게만 지워진 돌봄 책임을 사회화하고, 모든 아동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과 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최적의 길이라는 주장은 그리스 신화 속의 카산드라의 말처럼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분명하다. 돌봄 제공방식을 규정하는 한국의 가족책임주의 습속에 균열을 낼 것인지 아니면 현재 조건을 인정하고 차선을 고민할 것인지 결단할 필요가 있다. 후자는 정치적으로 훨씬 덜 부담스러우며 사회적 비난도 피할 수 있는 손쉬운 길이다. 하지만 그 선택은 성과 계층 간 불평등을 확대하고, 저출산과 고령화의 부정적 결과를 증폭 시킬 것이다. 반면 전자의 선택은 한국사회가 익숙하게 걸어왔던 경로를 이탈함으로써 고통스러운 갈등 과정이 수반될 것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북유럽 국가들도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돌봄 제공방식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지금은 대표적인 사민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노르웨이가 40년 전만 해도 여성의 돌봄 책임을 강조했다(OLK, 2010:13-4). 그렇다고 공적보육시설을 늘리고, 짧지만 관대한 육아휴직을 도입해

공적보육을 보완하도록 한다고 해서 한국사회에 뿌리깊이 남아 있는 가족책임주의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결국 정답은 한국사회 패러다임이 신자유주의적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에게 자신의 아이를 남들과 다른 특별한 경쟁력을 갖춘 아이로 키워야 냉혹한 신자유주의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라지고, 사회가 내 아이와 다른 이의 아이를 함께 돌보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라는 신뢰가 두터워질 때 비로소 한국의 돌봄 제공방식이 성과 계층 간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전통적 가족책임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는 사(私)로 추락했던 의(義)를 공공(公共)의 의(義)로 전환시킴으로써 역사 속에 면면이 이어오던 유교적 이상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는 가장 유력한 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장준만. 2009. 『어머니 수난사』. 서울: 인물과 사상사.
- 권유리야. 2007. 가족주의에 나타난 식민과 탈식민의 두 징후: 이문열의 영웅시대 연구. 『국제어문』, 40:235-263.
- 김경일. 2004.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서울: 푸른역사.
- 김덕균. 2005. “유교적 가족주의, 해체인가 복원인가: 새로운 가족운리를 모색하며”. 『유교사상연구』, 23: 109-134.
- 김동춘. 2002. 유교와 한국의 가족주의: 가족주의는 유교적 가치의 산물인가? 『경제와 사회』, 55:93-118.
- 김승현. 2010. 가족주의와 공공성: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의 측정에서 사회적 소망성 편향. 한국정치학회보, 44(3):53-74.
- 김정희. 1997. 기독교와 여성주의: 신약 성서를 중심으로. 『가족철학: 남성 철학과 여성 경험의 만남』. pp. 89-125.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태만. 2000. 아시아적 가치와 동아시아 발전의 원동력: 유가의 가족주의와 아시아의 근대화.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0년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pp. 79-106.

- 김혜영. 2003. 한국의 가족주의와 여성 인권. 『아시아여성연구』, 42:9-46.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보육통계.
- 송재룡. 2002. 가족주의와 한국 사회의 ‘삶의 유형’ 『현상과 인식』, 26(1·2):9-30.
- 쭈치시. 2011. “철학을 잃고 아름다움을 버리다: 논어, 유학, 그 외의 것들”. 상하이문예출판사 엮음. 『동양을 만든 13권의 고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진짜 삶을 얻다』. 황희경·박문현·김갑수·임채우·김예호·김동민·김원중·임태홍·김진무·조남호·송춘남·김덕균·강중기 옮김. pp. 11-62. 경기도: 글항아리.
- 윤홍식·송다영·김인숙. 2010.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공동체출판사.
- 이삼식·신인철·조남훈·김희경·정윤선·최은영·황나미·서문희·박세경·전광희·김정석·박수미·윤홍식·이성용·이인재. 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최효진·서문희·박세경·윤홍식·진미정, 2010.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심층 분석: 저출산 원인과 정책방향』.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숙인. 2005. 『동아시아 고대의 여성사상』.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 이승연. 2004. 유교가족주의와 공사론: 주자의 중범사상을 중심으로. 2004년 한국 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자료집, pp. 35-39.
- 진경환. 2010. 전통과 담론. 전통문화연구소 기획, 『전통 근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권력』. pp. 156-174. 서울: 인물과 사상사.
- 통계청. 2011. 성별 경제활동 인구총괄. 접근 <http://kosis.kr>
- 홍승아·이미화·김영란·유계숙·이영미. 2009.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정책이용실태 및 일가족양립현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oki, O and D. Aoki. 2005. “Invisible poverty in Japan: Case studies and realities of single mothers” Journal of Poverty, 9(1): 1-21.
- Bambra, C. 2004. The world of welfare: illusory and gender blind? Social Policy and Society, 3(3): 201-211.

- Emerek, R. 1998. "Atypical working time: Examples from Denmark." pp. 131-139. In *Women, work and the family in Europe*, edited by Drew, E., R. Emerek, and E. Mahon. New York: Routledge.
-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c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Fargion, V. 2010. "Children, gender and families in the Italian welfare state". In Ajzenstadt, M., & J. Gal eds., *Children, gender and families in Mediterranean welfare states*, pp. 105-128. New York: Springer.
- Fukuyama, F. 1996.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Y: Free Press.
- Guo, J. and N. Gilbert. 2006. "Welfare state regimes and family policy: a longitudina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6: 307-313.
- Kallinikaki, T. 2010. "Gender, children and families in the Greek welfare state". In Ajzenstadt, M., & J. Gal eds., *Children, gender and families in Mediterranean welfare states*, pp. 181-202. New York: Springer.
- Mínguez, A. 2006. "The persistence of male breadwinner model in southern European countries in a compared perspective: Familism, employment and family policies." *Marie Curie Fellowship Association(MCFA) ANNALS* v.4.
- Kalmijn, M. and C. Saraceno. 2008.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intergenerational support: Responsiveness to parental needs in individualistic and familialistic countries" *European Societies*, 10(3):479-508.
- Kalmijn, M. and C. Saraceno. 2008.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intergenerational support: Responsiveness to parental needs in individualistic and familialistic countries" *European Societies*, 10(3): 479-508.

- Kremer, Monique. 2005. "The Cultural Dimension of Welfare States: Ideals of Care and Women's Work" Paper prepared for the 1st Annual ESPANet Conference. 22-24 September 2005, University of Fribourg, Switzerland.
- Leitner, S. 2005. "Conservative familialism reconsidered: The case of Belgium" . *Acta Politica*, 40:419-439.
- Leitner, S. 2005. "Conservative familialism reconsidered: The case of Belgium" . *Acta Politica*, 40:419-439.
- León, M. 2002. "Towards the individualization of social rights: Hidden familialistic practices in Spanish social policy" *South European Society and Politics*, 7(3): 53-80.
- Morel, N. 2007. From subsidiarity to 'free choice'; Child-and elder-care policy reforms in France, Belgium, Germany and the Netherlands.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41(6): 618-637.
- Morel, N. 2007. From subsidiarity to 'free choice'; Child-and elder-care policy reforms in France, Belgium, Germany and the Netherlands.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41(6): 618-637.
- Neufeldt, V. and D. Guralnik, 1997. *Webster's New World College dictionary* (3rd. ed.). NY: Webster's New World.
- OECD. 2008. *Social Expenditure Database*.
- OECD. 2010. *Factbook 2010*.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1.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
- Olk, T. 2010. Investing in children? Changes in policies concerning children and families in European countries. In Aizenstadt, M., & J. Gal eds., *Children, gender and families in Mediterranean welfare states*, pp. 3-33. New York: Springer.
- Ray, R., J. Gornick, and J. Schmitt. 2010. Who cares? assessing generosity and gender equality in parental leave policy designs in 21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0(3): 196-216.

- Sainsbury, D. 1999. "Gender, Policy Regimes, and Politics." pp. 245-275. in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edited by D. Sainsbur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Sraceno, C. and W. Keck. 2010. Can we identify intergenerational policy regimes in Europe? *European Societies*, 12(5):675-696.
- Struening, K. 1996. Feminist challenges to the new familism: Lifestyle experimentation and the freedom of intimate association. *Hypatia*, 11(1): 135-154.
- Valiente, C. 2010. "The erosion of "familism" in the Spanish welfare state: Childcare policy since 1975". In Ajzenstadt, M., & J. Gal eds., *Children, gender and families in Mediterranean welfare states*, pp. 129-142. New York: Springer.
- Wikipedia. 2011. Familialism. <http://en.wikipedia.org/wiki/Familialism>
- Wolf, M. 1974. "Chinese women: Old skills in a new context". In Rosaldo, M. and L. Lamphere, *Woman, culture, and society*, pp. 157-173.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Woods, D. 2006. "The logic of defamilialization: Problems of analysis for care work and the transformation of welfare state" Paper prepared for the 4th Annual ESPAnet Conference. 21-23 September, 2006 Bremen.
- Yoon, H. S. 2010. Emerging Role of Welfare State in Korea. Paper for the 8th Annual ESPAnet Conference in Budapest, Hungary, 2-4. Sep. 2010.

• M • E • M • O •

• M • E • M • O •

• M • E • M • O •

• M • E • M • O •

• M • E • M • O •

• M • E • M • O •